

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38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9. 26.

제 안 자 : 의회 · 행정위원장

□ 제안경위

- 2005. 9.21 권영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2005. 9.21 제1차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,
- 2005. 9.26 제4차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, 심사한 결과 의결되어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.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·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
- 또한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에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시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함(안 제1조)
-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법률고문을 의장이 위촉하며,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, 제4조)
- 법률고문을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(안 제3조)
- 입법 관련 자문, 소송수행 등의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5조)
- 법률고문 수당과 수임한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

- 법률고문 수당 : 5,280,000원
· 220,000원 × 2명 × 12월 = 5,280,000
- 소송 비용 : 별도예산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참고사항

-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법률고문(이하 “법률고문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은 안산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다.

제3조(해촉)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
2.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
3.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4.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5.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
 - 가. 불변기일의 도과
 - 나.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
 - 다.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
6.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
제4조(임기)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직무) ①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 입법에 관한 사안의 자문
2.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소송수행
3.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4. 기타 의장이 요구한 법령 및 자치법규 사항에 대한 자문(해석) 및 자료 제공

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소송비용 및 수당)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승 낙 서

본인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
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(인)

안산시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위 촉 장

귀하를 안산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안 산 시 의 회 의 장

[별지 제3호서식]

자문처리 실적부

자문사항			처리결과		
년월일	건명	자문의뢰내용	년월일	고문인	처리내용